약관

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약

MetLife

함께 찾아가는 인생

MetLife

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

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

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 (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, 이하 "전환대상계약" 이라 합니다) 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.

1. **소득세법 제 59 조의 4 (특별세액공제) 제 1 항 제 2 호**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소득세법 제 59 조의 4 (특별세액공제)

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 (제 1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.

1.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
2.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 (제 1 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)

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(보험료세액공제)

①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 제 1 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" 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·공제로서 보험·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·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·공제로 표시된 보험·공제의 보험료·공제료를 말한다.

②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 제 2 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·보증·공제의 보험료·보증료·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생명보험
2. 상해보험
3. 화재·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
4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공제
5. 「군인공제회법」, 「한국교직원공제회법」, 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」, 「경찰공제회법」 및 「대한소방공제회법」에 따른 공제
6.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·보증. 다만,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 조의 3 (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)
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.

2.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**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(장애인의 범위) 제 1 항**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(장애인의 범위) 에서 규정한 장애인
① 소득세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
3. 삭제
4. 제 1 호 및 제 2 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 (장애아동의 범위)
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 21 조 제 1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
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 명은 비장애인,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
⇒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
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 명은 비장애인, 한 명은 장애인인 경우
⇒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
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
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(장애인) 인 경우
⇒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.

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③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 (또는 장애기간) 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 3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.

제 2 조 제출서류

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” (이하, “장애인증명서” 라 합니다) 을 제출하여 제 1 조 (특약의 적용범위)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“장애인복지법”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·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

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 1 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④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3 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

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"소득세법 제 59 조의 4 (특별세액공제) 제 1 항 제 1 호"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.

장애인전용보험 전환 예시

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,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 (2019년 1월 15일~ 2019년 5월 31일)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,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(2019년 6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) 납입된 보험료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.

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"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(특약의 적용범위)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" 또는 "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 4 조 (전환 취소) 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"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제 2 조

(제출서류)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 (또는 장애기간) 이 종료됨에 따라 제 1 조 (특약의 적용범위)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장애인전용보험 전환 당해년도 취소 예시

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,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④ "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(특약의 적용범위)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" 또는 "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 4 조 (전환 취소) 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"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제 2 조 (제출서류)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 (또는 장애기간) 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(특약의 적용범위)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 4 조 전환 취소

①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제 5 조 준용규정

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,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•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.